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인

2015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의 자문)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23조의 녹색환

경정책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환경체험센터 설치·운영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청소년 환경체험단 운영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지역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3.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